

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266

제출년월일 : 1994. 11. 21

제 출 자 : 사 하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주차장특별회계 잉여재원이 예비비로 관리되고 있어 잉여재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기할 수 없음

2. 주요골자

중장기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로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잉여재원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확보 관리할 수 있는 조항 신설

3. 관계법령

주차장법 제21조의 2 (특별회계 설치)

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제6조 내지 제8조”를 “제7조 내지 제9조”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6 조(사업비 적립)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제1조~제5조 (생략)	제1조~제5조 (현행과 같음)
(신설)	제6조(사업비 적립) <u>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.</u>
제6조(예비비) (생략)	제7조(예비비) (현행과 같음)
제7조(준용) (생략)	제8조(준용) (현행과 같음)
제8조(시행규칙) (생략)	제9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